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4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안호영 · 정혜경 · 윤준병
박 정 · 박희승 · 김준혁
김종민 · 김우영 · 이춘석
민병덕 · 장철민 · 이성운
의원(12인)

제안이유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주요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적 투자를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을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보전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이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의 수립,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완수 및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발전공기업들의 통합을 포함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 환경훼손·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투자를 통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보전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의 종료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정의롭고 균형있게 개발·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발전산업”이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발전설비의 운영과 정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공공재생에너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에서 개발·소유·운영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출자·출연 기관

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공공협력과 주민주
도성 및 이익공유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란 공공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발전사업자로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란 공공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
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이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용
한 전력의 생산과 그 발전시설의 정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화석연료 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
업자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화석연료 발전산업”이란 화석연료 발전소를 이용한 전력의 생
산, 화석연료 발전소의 정비 또는 화석연료 발전 연료의 제조·공

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1.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근무하거나 화석연료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화석연료 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민간위탁 업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12. “공동접속설비”란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기존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전기저장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기후정의”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책방향을 말한다.
 15.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이란 둘 이상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발전공기업”이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과 관련되는 영업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의

수립,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이용이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재생에너지가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에 의하거나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의 방식으로 개발·소유·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 공유수면, 공공기관의 건물 또는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등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 책무)

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제3호마 목에 따른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요

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협력과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을 통한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수립 주체는 각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5. 그 밖에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율이 달성될때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과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등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2.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투자 계획
3.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4.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 계획
5. 제11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육성, 해제에 관한 계획
6. 제14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7.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공공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수립
2. 국가계획 수립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이행 점검
3. 제11조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제
4. 제14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의무 이행 계획
5. 그 밖에 공공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수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자
3. 기후환경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위하여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공공재생에너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및 투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원의 조성 및 투자는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 계획과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녹색공공투자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0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완수 및 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발전공기업들의 통합을 포함한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산업 구조 개편 방안의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1조(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자원

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 환경훼손·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를 지정·육성 및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전지구 지정등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발전지구 지정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회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 지정 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지구 및 예비발전지구에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등에 있어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예비

지구의 지정 단계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발전지구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해당 지역의 제2조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공재생에너지 공공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경우 우선권 부여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로 본다.

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12조(주민 의견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전지구 지정등에 있어 그 계획안을 지구 지정등 예정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시·도의 시·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실사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환경, 보건, 경관, 문화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민대표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의견수렴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 해소대책을 포함한 답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발전지구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 의견수렴 및 현장 실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공공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지원
2.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3. 에너지 복지 지원
4. 제11조제8항에 따른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 중 10분의 4 이상을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이하 “특별자치시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 등은 이를 제5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이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 화석연료 발전산업 분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이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자신이 수행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종전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 생계 안정, 전직 및 재취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함으로써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

⑤ 제1항에 따른 고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재생에너지의 효과적인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발전지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시설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설치·운영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